

總·學長 선출의 社會政治的 배경

柳初夏
(忠北大 哲學科)

1. 民主主義의 核心：自治・自律

민주주의란 국민 일반이 주권자가 되는 정치적 이념·제도이다. 통치자와 피치자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민주 정치의 윤체이다. '국민 일반이 국민 일반을 다스리는 정치' 곧 '국민자치'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국민 '일반' 곧 국민 '전체'가 국민 자신 내지 국가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를 띤다. 간접 민주주의로서의 현실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이 수행·달성·창출하도록 설정된 임무·목적·가치, 권력 기구의 구성(선출)과 재구성(교체)의 절차·방식, 권력 기관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또는 권력 기관들 상호 간의 참여·견제·지도·감독·비판·판정의 수준·범위·통로·한계 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달리한다. 권력의 분립과 균형을 골격으로 하는 절차 중심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건 의결의 민주성과 집행의 집중성을 근간으로 하는 목표 중심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건 간에 국민·인민의 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임에는 다름이 없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국민 '에 의한' 정치(절차·방식)의 측면과 국민 '을 위한' 정치(목표·가

치)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체제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민주주의도 국민 '의' 정치(명분·주체)라는 측면에서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민자치의 원리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격동이나 사회주의권에서 진행되는 진통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 '의' 정치를 재대로 확립하려는 몸부림의 표현이다. 현실 민주주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자치의 측면임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한다. 국민 '에 의한' 정치의 측면을 직접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기통치' 곧 자치는 훨씬 더 무거운 비중을 지닌 것이 된다. 요컨대 어떤 체제의 민주주의에서도 권력 기구·권력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대표자로서만 정당하게 성립한다.

권력 관계에서 본 '자치'는 개인 및 집단의 각 수준에서 국민들이 행사하는 기본적 권리·권력으로서의 '자기결정'을 뜻한다. 민주 사회에서 경제·사회·문화의 각 부문 및 도·시·군·구 등 각급 지역 단위는 중앙 정부의 통제 이전에 스스로의 의사와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자격과 권리を持つ 수 있어야 한다. 혈연·지연의 자연공동체뿐 아니라 기업과 학교 및 각종 사회 단체의 이익공동체도 중앙과 지방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일정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자치란 결국 자연인, 법인, 직업·직급별 결사, 협의체, 동호 단체 등 각급 개인과 집단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트대 위에서 스스로의 일을 결정·실행·규율하는 것, 즉 간단히 말해 자율이다. 이러한 자기결정·자기규율을 현실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가 바로 각급 단체·집단의 구성원이 그 代議의 권력기구 내지 대표자를 직접 뽑는 것이다. 대표·대의기구의 직선은 정당한 민주공동체를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2. 政治와 教育의 歷史 : 獨裁 · 他律

대한민국 전국 이후 아홉번의 개헌을 거치면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바뀐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는 단 한번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험한 적이 없다.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는 대내·외적 종속과 독재로 점철되었다. 한국 현대사를 물들인 이러한 오욕은 국제 금권 권력의 규정력을 논외로 철 때 무엇보다 역대 정치 권력의 반민주적·반민족적·반자주적 성격에 기인한다. 특히 1961년의 쿠데타 이래 30여 년간 역대 정권은 정치 군부에 의해 장악되었고, 5·16의 무력 쿠데타 이후에도 1972년과 1980년에는 당시의 헌법을 깡그리 깃밟는 어거지 ‘비상’ 사태가 일방적으로 선포되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1972년의 이른바 10월 유신에서 제6공화국의 출범에 이르는 15년 동안 권력의 정상을 겸유한 박정희·최규하·전두환 등은 다섯번에 걸친 간접선거로 선출된 ‘체육관 대통령’이었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차치·자율의 요소들은 다 접어 두고 대통령 직접선거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게 되었다.

군부 독재의 전횡과 탄압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기초인 차치를 말살하였다. 제2공화국 시절 잠깐이나마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제3공화국 이래 역대 정권은 부당한 유보 조항을 헌법에 삽입하거나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질식시켜 왔다. 근원적으로 지방자치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교육자치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것은 저터한 독재와 타율의 역사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내 고장의 대표를 내 손으로 뽑고 싶다”는 지역 주민의 소망과 “교육감, 교육위원을 내 손으로 뽑고 싶다”는 교육자들의 바람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싶다”는 국민적 열망 속에 끊임없이 잠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52년 이후 제한적으로 실시된 초·중등 교육의 차치제와 1953년 이래 부분적으로 실시된 대학교육의準直선제적 차치 관행(교수회의 총장 추천 및 교수직 임명 등의 등)은 5·16 이후 줄곧 ‘꿈의 鄕愁’를 불러 일으켜 왔다.

요컨대 정치 군부에 의한 경통성 없는 정치 권력의 창출과 재창출의 연속 과정, 특히 제4공화국 이래의 과행 정국 속에서 대통령 직선은 물론 지방자치와 학원 자율은 ‘그림의 떡’으로 무참히 갈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 그와 함께 과거 정부 수립 이전 해방공간 및 4·19 직후의 열린 정치공간에서 민주교육의 건설과 교육자의 신분 보장을 이루기 위해 결성되고 활동했던 ‘조선교육자협회’와 ‘조선교육연합회’ 및 ‘한국교원노조연합회’는 교육 주체들의 가슴과 머리 속에 공동의 열망, 공동의 거울로 조용히 그러나 물끓듯이 또는 불타오르듯 뜨겁게 부끄러움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

3. 民主化의 進展과 教育民主化運動

‘유신’의 총통제적 군부 통치와 12·12, 5·17의 新군부 폭압 지배는 그러나 4·19로 나타난 자연발생적 저항보다 훨씬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민주변혁운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70년대를 통해 진전된 계벌의 비대화와 ’80년대 이후 변모된 경제권력·정치권력 관계 위상(후자에 대한 전자의 상대적 독자성 확대 및 상대적 우위성·규정력 확보)은 反독점·反독재 연합 세력의 물질성 강화를 필연적으로 귀결시켰다. ’80년대 이후의 민주 운동은 더이상 명망가들의 양심 운동이나 절차적·형식적 민주화에 만족하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민족자주화·정권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투쟁이 민생·민권의 실질화를 지향하는 기총대중의 요구 투쟁과 긴밀

히 결합된 민중운동으로 상승해 왔다. 6·29 '승리'를 이끌어낸 '87년의 6월항쟁은 민족민주운동의 이러한 발전·고양의 한 성과이자 보다 높은 운동을 예고하는 하나의 매개이다.

6·29로 가시화된 민민운동·민주국민의 승리는 무엇보다 대통령직선제의 부활을 통해 대표된다. '직선쟁취'의 성과는 권력 핵심인 대통령뿐 아니라 산업별 협동조합 등 각종 단체의 長이나 심지어 국민학교 저학년의 반장을 포함한 모든 영역·수준 대표의 직접 선거가 일반화되는 데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식견·판단력을 지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식인으로서의 교사·교수가 자신들 및 소속 공동체의 대표·대의 기구를 직접 투표로 선출·구성하려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저 서릿발 같은 유신 치하에서 교육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해직·수감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권력 비관의 화살을 쏘아댔던, 그리고 10·26 이후의 안개 정국과 5공의 폭압 아래에서도 민주교육·민중교육의 깃발을 흔들어댔던 이 땅의 선진적 지식인으로서의 교수와 교사들은 6·29를 전후하여 더욱 힘찬 교육적·정치적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85년 「민중교육」지 출간과 '86년 개헌 촉구 시국선언 및 '교육민주화선언' 그리고 '87년 4·13호헌 조치 철회 촉구 시국 선언 등으로 표현된 교사·교수들의 민주화 의지는 '민주교육실천협의회' ('86.5.15),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87.6.26), '전국교사협의회' ('87.9.27) 등 교육 주체들의 전국적 민족민주운동 조직의 결성으로 더욱 강고하고 지속적인 실천 활동의 틀을 열매맺는 데까지 확산·고양되었다.

교사·교수들의 실천 연대에 나타난 이러한 발전은 전반적으로 금권 폭력 정권의 전근대적 탄압 뒤 그에 대한 민족민주 민중운동·교육운동의 의식적·조직적 성장을 반영한다. 그러나 교육 주체들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관심은 여전히 교육의 민주화와 학원의 자율화를 향해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초점은 교육 행정의 책임있는 대표자를 교육 주체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일, 그리고 학원 운영과 교육 현장

에 있어 교육 주체들의 일반 의사를 반영할 삼의·의결권이 있는 대의 기구를 상설화하는 일에 놓여 있다.

4. 民主學園·自律教育의 制度的 基礎

각급 학교는 일반 사회의 다양한 부문·계층·직급별 이익 추구 結社體나 취미·봉사 단체들에 비해 훨씬 앞서 있는 일종의 본격적인 사회 또는 공동체이다. 학문·사상·문화의 계승·비판·발전은 민족·국가 공동체의 존속·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구성 인자이고, 학원의 구성원들은 이익 단체나 취미 단체에 비해 자의적·임의적·우연적 가입·탈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데이 적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원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이념적 유대는 인위적이라기보다 자연적인 요인에 따라 형성된다. 그런 만큼 학원 공동체는 혈연·지연 공동체를 제외한 어떤 사회 단체보다 먼저 자치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되풀이 언급한 대로 민주 원리로서의 자치·자율은 공동체의 구성원(특히, 성인) 일반이 그 대표자로서의 행정 책임자를 선출함과 아울러 그들의 공동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할 대의 기구를 구성·재구성함으로써 현실화된다.

간접 민주주의가 일반화된 현대 국가들이 국민소환·국민청원·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를 덧붙여 채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국민의 정치' 축면을 가능한 만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직접 민주 요소가 보완적 지위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간접 민주 오소보다 원리적·당위적으로 부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정치'는 '가능한 최대한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원리이다. 지역 공동체나 학원 공동체가 그 대표 및 대의 기구를 직접 선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각급 학교에서의 일차적 교육 주체인 교사·교수의 總意 기구 또는 代議 기구로서 (명)교사회의 및 교수(협의)회·교수평의회는 합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초·중등 학

교 교장의 임기제 및 대학(교) 총·학장의 직선제는 필수적 제도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교사·교수들의 전국적 민주운동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핵심과 교육 당국은 이들 요구를 계속 무시·외면하거나 탄압해 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저들은 스스로의 비민주적 본성을 응변적으로 고백하고 있다. 교육은 언론과 더불어 현재와 미래의 국민 성원들로 하여금 민족·국가 공동체의 역사적·현실적 가치를 학문·사상·문화의 축면에서 수용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나누어 수행한다. 6공의 금권 권력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언론 통계와 학원 탄압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민족자주와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체득하는 의식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이 있다. 저들의 이러한 통제와 탄압은 궁극적으로는 독점과 독재, 금권과 정권의 배타적 유착 구조 및 그 대의적 지지 기반으로서의 예속 관계를 항구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 행정 책임자의 직접 선출과 교육 주체 대의 기구의 상설화라는 교육운동의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의 자율화와 학원의 민주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공동체의 자주성 확보와 국가공동체의 민주성 확립에 있다. 그런 만큼 민족자주화 및 정치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서도 그 요인적 과업인 교육 민주·학원 자율, 그리고 그 제도적 기초인 학원에서의 대표 직선 및 대의 기구 설치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5. 教育部案

總·學長 選出方式의 問題點

최근 들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 총장의 선출 방식을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 교육부를 내세워 권력 당국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의 핵심은 10~50 명의 총장추천위원회가 총장 선출의 실질적 최종 기능 또는 교수들의 직접 투표에 선행하는 후보 선정의 배타적 권한을 수행·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위원회에 대한 학생과 사무직원의 참여는 배제하되 학부모와 동창 및 지역사회 대표

등 학외 인사의 참여는 개방한다는 내용도 덧붙여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 개정안은 전국 각 지역의 주요 국립대학 가운데 지금껏 유일하게 임명제 총장이 군림하고 있는 부산대가 '91년 9월에 임기가 시작되는 새 총장의 선출을 눈 앞의 과제로 맞이한 시점에서 출현한 것으로, 국립대 총장의 직선 관행이 全面化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듯하다.

이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총장 직선은 교수평의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함께 대학자율화의 양대 초석이다. 이 초석을 뿌리 뽑으려는 기도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反시대적 행태이다. 둘째, '89년 교육민주화 4단계가 공동 成案하여 '90년 국회에 청원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의면하고 여·야 정치권이 합의·개악한, 따라서 앞으로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할 현행 사립학교법이 총장 선출에 관한 전형적 권한을 재단에 부여한 것과 이번의 교육부 개정안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88년 이래 각 대학은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의 기능 수행에 따라 반민주적 실정법의 한계를 뚫고 실상 총장 직선의 관행을 누적해 왔다. 관권이나 재단이 악성 전횡을 발휘하는 소수 대학을 제외하면 이제 오히려 대통령이나 재단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총장을 회귀하다. 넷째, 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 대표 등 학외 인사들의 위원회 참여는 위원회의 어용화 또는 적어도 反자율화 내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을 수반한다. 이 점은 6공권력의 옹위 집단인 민자당에서 조차 최근 '교외 인사 참여는 교수들이 사실상 총장을 추천(실상은 선출: 필자주) 해 온 관례에서 더 후퇴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지적한 바 있다. 민자당이 반대할 정도의 반민주적 개악을 민주적 교육 주체들이 승복할 수는 결코 없다. 다섯째, 학외 인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교수와 더불어 대학의 3대 구성 요소 집단인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도리어 배제시킨 점은 일종의 모순이다. 이는 헌법(31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과 학교 행정에서의 지위·성격에 따라 총장 선출 등 대학 운영 주요 사안의 심의·의결에 적정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

어야 한다. 여섯째, 대학에서 선출하여 추천하는 2명 가운데 1명을 교육부나 대통령이 선택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총장을 직선한다는 것은 대학의 자치·자율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점에 주된 의의가 있으며, 2명을 선출한다는 것은 실질적 의미에서 자율적 선출이 아니다. 끝으로 이번의 교육부 개정안은 대학과 교육의 합리화·민주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정통성 없는 정권의 부당한 저속에 대학을 악용하는 의미를 지닌다. 대학교육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되게 마련인 현실에의 건강한 비판 의식을 이개정안은 적어도 간접적으로 봉쇄한다. 대학인으로 하여금 소속 공동체에서부터 자치·자율이 불가능함을 강제로 인정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6. 總 · 學長 選出에 관련된 現實的 課題

총장의 직선은 그 자체로 완벽한 대안일 수 없다. 직선 총장이라고 해서 임기로 보장된 4년간 모든 일을 대학 구성 주체들의 일반 의사로 존중하는 자율적·민주적 방식으로 처리 운영할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오건으로서는 총장의 직선보다 오히려 대의 기구로서의 교수평의회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 교수평의회는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인사·재정 등 주요 사항의 침행 결과를 심사·평가하는 권한을 대내적으로 가져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권한은 교수평의회에 주어지는 것이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대학인을 포함한 전반적 민주화운동의 성과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상 교수평의회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이 상당 부분 학생 및 교직원과 공유되어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각각 교육 관계에서의 ‘피교육자’ 및 연구·교수·학습이라는 대학의 주기능에 대한 ‘보조 기능의 수행자’라는 점에서 대학 운영의 주체로서는 일정한 정도 제한된 지위를 점유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근원적으로는 교수와 함께 대학을 이루는 정당하고 필수적인 구성 주체이다. 대학 운영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누릴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정

하는 태도는 오늘날에는 適實性을 상실한 봉건적 계급관·윤리관에의 무반성적 집착의 산물이기 쉽다.

교수·학생·교직원이 각각 정당한 뜻을 누리는 대학평의회가 합법적으로 구성되기에 아직 짧지 않은 민주화에의 歷程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 길을 走破해 낸 지점에서라면 총장 직선제는 변용되어도 좋다. 그 경우 예컨대 교수·학생·교직원이 적정 비율로 선출되어 구성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약간 명의 후보를 천거하고 그들에 대한 세 주체 집단의 보통·직접 투표의 결과를 적정 비율로 산정·가산하는 방식을 통해 과반수의 득표자를 탄생시키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총장 직선의 제도를 대체할 어떤 실질적 대안도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정권 당국이 대학의 자율성을 원천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 인정을 받아내기까지 총장의 직선은 교수평의회의 합법 기구화와 함께 대학 자치의 최소 요건일 수밖에 없다.

한편, 총장 직선과 관련하여 전술된 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협행법에 따르면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 경력이나 실지어 교육 경력조차 전연 가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행정 관료나 실지어 군 출신 인사가 대학 총장으로 영입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실제로 그러한 예가 있다. 둘째, 총장은 현재 법제상 교수의 자격을 보지할 수 없다. 이는 거의가 교수 출신인 총장을 취임과 더불어 동료 교수 집단과 대립·갈등하는 위치에 몰아 넣는다. 셋째, 대학내 편제상 총장의 하급 기관일 뿐 아니라 교무처장·학생처장(및 연구처장)보다 아래 서열에 놓인 국립대 사무국장이 실상 총장의 통제圈 바깥에 있음으로써 총장의 실질적 지휘권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 계단의 尊權 아래에 있는 사령대 총장은 이 점에서 말할 나위조차 없다.

이들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총장 후보의 자격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교수 경력(적어도 교직 경력)을 포함시킨다. 이는 교육이라는 한 사회 부

문의 자치를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일, 즉 타율적 침해를 방지하는 일이 된다. 둘째, 총장은 재임중 및 임기 후에도 정년까지 교수직을 보장받는다. 이는 재임중 대학인과 불필요한 마찰 관계에 놓이거나 임기 후와 관련하여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셋째, 총장은 교수평의회의 결의에 의한 불신임을 받지 않는 한 임기종료임당하지 않는다. 이는 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安全瓣이다. 넷째, 사무국장 위에 교수직 사무처장을 둔다. 이는 총장이 학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다섯째, 사립대의 재단은 재정 轉移金이외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총장에게 간섭할 수 없다. 이는 금력의 압력·회유로부터의 보위책이다.

요컨대 총장은 재임중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합리적·비판적 자세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7. 總 · 學長 選出方式의 社會政治的 展望

총장 선출 방식에 관련된 현실적 과제들이 제6공화국 시기 내에 해결될 전당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총장 선출을 포함한 대학자치·교육자율의 바람직한 제도가 가까운 미래에 확립될 희망은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별로 없다. 또한 야당을 포함한 보수 정치권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실질적 연대와 협조를 볼 때, 교육과 학원의 자율적 민주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98년 정도에 가서야 그 조짐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객관적 상황'의 관점에서 성립하는 것일 뿐 '주체적 운동'의 관점에서도 똑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에서의 사회정치적 역동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6공 권력이 민자당의 창당을 통해 과거 야당과의 일차적 보수연합을 이룬 것과 대응하여 민족민주 운동 진영 또한 나름대로 적극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다. 노동운동은 급속도로 증가한 민주노조의 결성을 기초로

광범한 연대를 이루면서 임금인상·처우개선 등 단순한 경제적 요구에 머물지 않고 그 요구들이 권력 관계의 변혁 내지 변화를 통해서만 현실화 될 수 있음을 깨달아 가고 있다. 농민·철거민·노점상 등 각 부문의 기층대중들도 비슷한 방향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교수·변호사·예술인·의료인 등 다양한 중간 계층에서도 민족민주 지향의 대중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의 영역과 수준을 넓히고 높여 나가고 있다. 조선 시대 이래 기존에의 비판과 저항의 선도 계층으로 기능해 온 청년학생은 물론, 크고 작은 지역공동체나 학교별 동창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시민 집단이 나름대로 민주화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각 부문·지역의 다양한 민주운동 집단은 서로 다른 부문간·지역간 연대를 통해 의식화와 조직화의 수준과 강도를 더해 가면서 서로 닮아가고 있다. 정치·사상적 민주화의 요구와 경제생활적 민주화의 요구, 형식·질차적 민주화의 요구와 실질·내용적 민주화의 요구, 독점·재벌과 독재 군부에 맞서는 '물리적 힘'으로서의 대중적 동력과 '사상의식적 힘'으로서의 과학적 인식 능력 등이 서로 교차하면서 통합을 넓히고 있다. 금권·정권·외세·封建遺制의 反시대적 성격에 대한 종체적·유기적인 인식과 통찰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족민주 민중세력의 통일·단결에 대한 자각도 더디지만 줄기차게 깊어지고 있다. 이들 변혁 지향 세력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양해의 폭 또한(정권 측의 惡手 연발에 따라)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민족민주적 지향을 서로 달리 지닌 다양한 양심 세력들이 '국민연합' 내지 '범국민 대책회의'라는 공동의 연대틀을 이루면서 진보를 향한 공동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다.

객관 정체로 보면, 민주 세력 내지 민중 세력의 이러한 성장과 연대 확산은 지금껏 반독재 민주전선에 몸담고 있었던 보수 야당들이 6공 권력 핵심을 둘러싼 제2의 보수연합에 휩쓸려 들어가는 현상과 짹지워진다. 이를테면 파당적 이기성에 매몰되어 범국민적·범민중적 권익을 위한 개혁보다 혈체제에서의 권력 분점에 안주하려는 자유주의적 보수야당과 민족민주 민중세력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이 차츰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균열이 더이상 메워지기 불가능한 정도로 확연히 드러나게 될 때, 진정한 민주 세력으로서의 민중연대는 嫉苦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향해 본격적으로 전군하게 될 것이다.

이들 민중 세력과 독점·독재 세력의 처절한 대결은 물론 회피될 수 있다. 그 파국의 방지는 두엇보다 후자가 전자에게 의미있을 만큼 분명히 양보하는 일, 과감한 실질 민주적 개혁을 기만 없이 미리 단행하는 일을 통해 가능하다. 이것은 다시 남·북 관계와 북방 정책을 성실하게 진전시키는 일, 그리고 민족적 주체성과 국가적 자주성에 입각하여 국제 금권 세력으로부터 민중적 권익을 지켜내는 일과 결합될 때 相乘 관계를 통해 엄청난 가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총장 선출 방식을 포함한 교육자주·학원자율의 과제는 앞서 말한 일들에 비하면 일단 매우 작은 일에 속한다. 다만 그 작은 일에서의 전향적 해결도 만일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의미있을 뿐 아니라 굉음을 일으키는 파국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저연시키는 데에 의미있게 기여할 것이다. 총장의 직선과 교수평의회의 합법 기구화를 비롯한 대학 운영의 자치·자율성 확보는 근시안적 태도를 탈피하고 멀리 크게 보면 결국 대학 당국과 교육부 및 정권의 편에서도 실상 책임 경감과 학의 도출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여기서 반민족·반민주 연합 세력이 파국과 화해 중 어떤 길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건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저들이 얼마나 제대로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

“가진 자는 제가 가진 물질을 자신의 인격으로 오해한다. 그들은 엄청난 풍요가 자신의 나락임을, 환상의 행복임을, 인격의 부패임을 모른다. 그들은 손톱만큼의 물질적 양여를 전인격적 파산으로 오인한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손실만큼 구제받을 것이며 자신이 욕구하는 이익만큼 파멸당할 것이다.” ■